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2-약관-067호(2022.04.12)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펀드 모바일 기프트 서비스 이용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고객이 집합투자증권(이하 "펀드")을 모바일로 선물하거나 선물 받아 펀드를 신규 할 수 있는 서비스(이하 "펀드 모바일 기프트")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은행")과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이하 "이용자")간에 "펀드 모바일 기프트"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약관의 적용)

- ① "펀드 모바일 기프트"의 거래에는 이 약관을 적용하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자동계좌이체약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약관」 및 「수익증권저축약관」 및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 ② 요구불예금의 경우 해당 예금 별 거래약관을 적용받고, 펀드의 경우 해당 상품의 집합투자규약 및 관계 법령을 적용합니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펀드 모바일 기프트"는 "선물보내기"와 "선물받기(펀드 신규하기)"로 구성됩니다.
 1. "선물보내기": 선물을 보내려는 사람이 선물할 대상 펀드를 정하고 선물 금액, 출금 계좌 등과 함께 선물을 받을 사람을 지정하여 선물을 보내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2. "선물받기", "선물보내기"를 통해 지정된 선물을 받을 사람이 "선물보내기"를 통해 지정된 펀드를 신규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 ② "집합투자증권(펀드)"은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으로,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산운용회사가 운용하고 그 결과를 분배하는 금융상품입니다.
- ③ "출금계좌"란 "선물보내기"를 할 때 선물을 보내는 사람이 지정한 "은행"의 계좌를 말하며 "선

물받기"를 통해 펀드를 신규할 때 선물금액이 출금되는 계좌를 말합니다.

제4조 (가입대상)

- ① "펀드모바일기프트"의 "이용자"는 만19세이상 개인고객이며, 외국인 비거주자는 제외됩니다.
- ② "펀드모바일기프트"의 "이용자"는 "은행"이 실명 확인한 요구불계좌를 정상적으로 보유한 개인에 한정합니다.

제5조 (서비스 내용 및 이용방법)

① "펀드모바일기프트" 선물보내기

1. 만19세 이상의 고객에게 펀드를 선물 보낼 수 있습니다.
2. '하나원큐'앱을 통해 선물 할 대상 펀드를 정하고 선물 금액, 출금계좌, 선물 받는 사람의 성명, 연락처 등을 입력하여 선물을 발송합니다. 이때 보내는 사람의 출금계좌의 선물할 금액은 지급정지됩니다.
3. 선물 발송 후, 선물 받는 사람이 선물하는 금액을 수령하기 전까지는 '하나원큐'앱을 통하여 "선물보내기" 취소가 가능합니다.
4. 선물 발송 후, 선물하는 사람의 출금계좌에 (가)압류 등 법적제한, 담보제공 등으로 지급가능 금액이 부족하게 되는 경우 "선물보내기"는 즉시 취소됩니다.

② "펀드모바일기프트" 선물받기 (펀드 신규하기)

1. 선물 받는 사람은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수신한 URL을 접속하여 휴대폰 본인인증 절차를 거친 후 '하나원큐'앱을 통해 받은 선물함에서 "선물받기"나 "반송하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선물받기"를 선택한 경우 "은행"의 펀드 가입 절차에 따라 펀드를 신규 가입 할 수 있으며, 펀드를 신규 할 때 선물한 사람의 출금계좌에서 선물 금액이 해당 신규 펀드로 이체됩니다.
3. "반송하기"를 선택한 경우 받은 선물은 즉시 취소됩니다. 선물을 받은 날로부터 3일간 펀드를 신규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도 선물받은 날로부터 3일이 경과된 다음날에 자동으로 받은 선물이 취소됩니다.
4. 선물받은 사람의 투자자성향이 선물받은 펀드의 투자등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받은 선물이 즉시 반송됩니다. 기타 "은행"의 펀드 가입 규정 및 절차에 따라 펀드 신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물받은 펀드의 신규가입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받은 선물이 취소될 경우 선물한 사람의 출금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는 자동으로 즉시 해제됩니다.

제6조 (이용 금액과 이용 횟수)

- ① "펀드모바일기프트"를 이용할 때 보내는 선물의 최소 금액은 선물 1회당 1만원이며 최대 금액은 10만원입니다.
- ② "펀드모바일기프트"를 이용한 "선물보내기"는 1일 최대 10회까지 가능하나, 1일 동안 선물 보낸 금액의 합계가 최대 1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수수료)

"이용자"는 "펀드모바일기프트"에 대한 별도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선물보내기" 발송 및 "선물받기" 또는 "반송하기"를 이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무선데이터 통신요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통신요금이 발생한 경우 이를 "이용자"가 이동통신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제8조 (이용 시간)

"펀드모바일기프트" 이용시간은 별도의 제한이 없으나, "선물받기(펀드신규하기)"의 경우, "은행"의 펀드 신규 및 예약 가능 시간을 따릅니다. (신규 가능 시간: 평일 09:00~17:00, 예약 가능 시간: 신규 가능 시간 이외 모두 가능)

제9조 (손해배상 및 면책)

- ① 은행은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금액과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경과 이자를 보상합니다. 다만, 부정 이체 결과로 당해 계좌에서 발생한 손실액이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손실액을 보상합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

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은행이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 ③ 은행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④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은행은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써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보상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중단)

- ① 은행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장비의 장애 및 유지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유무선 서비스를 중지한 경우

3.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증설, 교체, 이전 등 시스템 관리 업무
 4. 정전, 제반 설비의 장애 또는 이용량의 폭주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5. 기타 천재지변, 전쟁, 폭동, 테러, 국가비상사태 등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 및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 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으로 인한 전자적 침해 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6. 은행이 정한 서비스 제공환경이 아니거나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라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경우 은행은 사전에 서비스 중단을 공지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사전 공지를 할 수 없는 경우 은행은 이를 사후에 공지할 수 있습니다.
 - ③ 서비스는 관련 법령, 정책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은행은 서비스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체 또는 일부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 ① 은행이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은행은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③ 은행이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2조 (분쟁조정 및 관할 법원)

- ① “이용자”는 “은행”과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은행”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② 이 약관에 따른 “펀드 모바일기프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에 대하여 “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3조 (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법률을 적용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22.05.23부터 시행합니다.

이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